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항공안전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시송달 대상자

| 성명 | 주소 |
|---------------------------|--|
| Carlos, 000000000 Oropeza | 인천시 중구 영종해안남로 321길 208 그랜드 인천 하얏트호텔 |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 항공안전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항공안전법 제43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정정요구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
안전정책과

○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 2023.6.20.(화)까지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김승진
주무관(☎044-201-42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